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10382
등록일자	2015.3.25.
결재일자	2015.3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희망복지지원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부구청장 직무대리	
이정진	옥미정	김효길	김창현	전결 03/25 주윤중	
협조자					



2015년 동 복지협의체 운영 계획

- 기 간 : 2015. 1. ~ 12.
- 위 원 수 : 252명(민간위원장 및 일반위원)
- 추진사업 :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사업 및 동 특수사업
- 추진방법 : 22개동 강남다·하기 행복지원단에서 자체사업 선정하여 추진
- 변경사항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위 원 장	공동위원장 (당연직-동장, 민간-호선)	단일위원장 (민간 - 호선)
사업비 예산과목	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	민간이전, 사회복지사업보조

- 소요예산 : 금11,000,000원(구비100%)

2015. 3. .

강 남 구
(복 지 정 책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서울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6조</p>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</p>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 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저소득 가구</p>
분야 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 ✓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p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)</p> <p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)</p> <p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)</p> <p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)</p> <p>⑤ 시장조사 ----- ()</p> <p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)</p> <p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✓)</p> <p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)</p> <p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)</p>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해당없음</p>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해당없음</p>

2015년 동 복지협의체 운영 계획

동 복지협의체 강남더·하·기 행복지원단 2015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“우리지역 우리이웃은 우리동네에서 해결” 한다는 모토를 5실천하고 마을 공동체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 및 방향

■ 추진근거

- 서울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6조
-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(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)

■ 추진방향

- 촘촘한 인적안정망 구축
- 지역사회관계망 속에서 네트워크 형성
- 관 주도를 탈피하여 민간 위원이 주도적 운영
- 동 여건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

II 추진 개요

- 기간 : 2015. 1. ~ 12.
- 위 원 수 : 252명(민간위원장 및 일반위원)
- 추진사업 :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사업 및 동 특수사업
- 추진방법 : 각 동별 22개 강남다하기 행복지원단에서 자체사업 선정하여 추진
- 소요예산 : 금11,000,000원(구비100%)

■ 변경사항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위 원 장	공동위원장 (당연직-동장, 민간-호선)	단일위원장 (민간 - 호선)
사업비 예산과목	복지정책과, 지역복지네트워크, 민관협력체계구축,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 관리비	복지정책과, 지역복지네트워크, 민관협력체계구축,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, 민간이전, 사회복지 사업보조

- 변경사유 : 민간위원의 적극적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

III 세부 추진 계획

1 구 성

■ 대 상 : 22개 동 주민센터

■ 위 원 수 : 10명 ~ 20명 자율구성

■ 위원자격

- 지역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주민실정에 밝은 종교단체, 사업자, 복지시설 기관장, 교육·고용·주거관계자, 봉사단체, 동복지위원, 통·반장, 개인 및 기타 단체회원 등
- 자원 제공이 가능하거나 발굴 및 연계가 가능한 자
-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, 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, 기관 관계자

당연직 위원	일반 위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지위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라이온스클럽 •복지시설 전문가(시설장) •종교단체 •주민자치위원장 •통장협의회회장 •자원봉사캠프장 •교육·고용관계자 •사업자대표 •의료기관(병·의원, 약국) •기타 자원제공 가능자, 단체 등

■ 위 원 장 : 단일 위원장(위원 중 호선)

- 민간위원장 :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자 중에서 선출
- 역 할
 - 회의 소집 및 회의 진행 총괄
 - 위원의 신규 위촉·해촉 대상자 추천

■ 임 기 : 2년 (연임가능)

- 근거:서울특별시 강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제10조(위원의 임기)
- 최초위촉일 : 2014.3.10.

■ 해촉사유

- 서울특별시 강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제11조 제4항 (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)
- 위원이 사망,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
-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경우 등

2 기 능

■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상시 사례관리

- 법적 복지급여로도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는 가정
-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지만,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

■ 洞 취약계층 발굴 체계 유지

- 복지담당 공무원 및 행복지원단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발굴 지원

■ 발굴된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지원

- 문제해결 위한 회의 개최 후 지원 방안 마련
-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

■ 동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복지시설, 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

- 복지관, 종교단체, 봉사조직, 학교 등과의 연계 등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네트워크 활성화

3 역 할



■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

- 위기가정, 틈새계층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발굴
-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나눔 결연사업 추진
- 동 복지협의체에서 해결 안되는 사례는 구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의뢰

의뢰가구	→ 사례관리가구	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
	→ 서비스연계가구	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

■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관리동 지정

연번	통합사례관리사	관 리 동
1	김정연	논현1,2동, 청담동, 수서동
2	구미라	신사동, 삼성1,동, 역삼2동, 일원2동
3	조상희	압구정동, 역삼1동, 개포4동
4	김미란	대치1,2,4동, 개포1동, 일원1동
5	배기혜	도곡1,2동, 개포2동, 일원본동, 세곡동

4 운영

정례회의 : 분기 1회 이상(필요시 수시)

- 즉시성을 요하는 사례관리 회의는 위원장 주관으로 수시 개최

회의 정족수

- 개 의 :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
- 의 결 :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

회의록 작성 책임 : 위원장

- 행복지원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, 서기를 둠
- 간사 : 복지팀장 - 회의안건 및 현황사항 보고(업무총괄)
- 서기 : 복지팀 직원으로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

비밀준수 의무 : 협의체 위원

- 개인정보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
-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유출 금지(사례 회의시 개인의 식별정보 삭제)

5 소 요 예 산 ----- 금11,000,000원

산출내역 : 500,000원×22개동 복지협의체=11,000,000원

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, 민·관협력체계구축,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, 민간이전, 사회복지사업보조

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필수

6 추진실적관리

22개동 복지협의체 추진사업 자체 계획 수립

- 동 여건에 적합한 특수사업 선정
 - 사업내용 :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, 기타 지역복지 특색 사업 등
- 보고기일 : 2015. 4. 3

상·하반기로 추진실적 제출

- 실적 내용
 -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
 - 지역자원 발굴 연계 실적
 - 우수 및 미담사례, 기타 동 특수사업 추진 실적 등
- 제출서식 : 붙임 1참조
- 보고기일 : 상반기(2015.6.30.까지), 하반기(2015.12.31까지)

7 교육 실시

일시 : 2015. 상반기 이내

대상 : 동 복지협의체 위원 및 담당 등 200명

교육내용

- 우수사례 전파 및 자원 공유
- 동 복지협의체의 역할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방안

8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

추진일정



고유번호증 등록 : 관할 지역 세무서등록

직인 예시 : 신사동복지협의체위원장인

보조금 통장 개설시 준비사항

- 위원장 본인 방문시 : 고유번호증명서, 위원장 신분증, 직인, 보조금전용 통장 개설확인서
- 담당 공무원이 대리할 경우 : 고유번호증, 위원장 신분증 사본, 공무원증, 위임공문, 직인,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

IV

행정 사항

- ▣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적합하도록 사업비 운영 관리
- ▣ 각 동 복지협의체는 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

V

기대 효과

- ▣ “우리지역 우리이웃은 우리동네에서 해결” 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구현
- ▣ 적극적인 지역 네트워크 활동으로 촘촘한 인적안정망 구축

- 붙임 1. 2015년 동 복지협의체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식
2. 지방보조금 신청서식